

# 가축분뇨 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 )	
사업장 소재지		(전화번호: )	
재활용 대상물질		[ ] 분 [ ] 요 [ ] 분뇨(혼합)	
재활용 방법		[ ] 액비화 [ ] 퇴비화 [ ] 기타( )	
1일평균 취급량		m <sup>3</sup> (톤)	
1일평균 생산량		m <sup>3</sup> (톤)	
주요 수집지역			
초지 또는 농경지	소재지		면적(m <sup>2</sup> )
변경내용	변경내용	변경전	변경후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** 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
  -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
2.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3.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### 처리절차

